탄 원 서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귀중

사건번호 : 2026고합589 (면담강요 혐의)

피고인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관련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먼저 복무 중 순직한 해병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을 겪은 유가족의 마음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이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순직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특정 피고인에게 제기된 별개의 형사혐의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증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탄원은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면담강요라는 구체적 혐의를 공정하게 심리하고 피고인 개인의 책임이 증명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 달라는 한 시민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1. 이 탄원은 2026고합589 사건 중 김계환 피고인의 면담강요 혐의에 한정됩니다

공개된 기소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순직 해병 사건의 후속 처리 과정에서 김계환 피고인과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 문연철 등이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압박에 관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문연철 전 부대장과의 공모 및 면담강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과 사회적 논쟁을 모두 하나의 유죄 판단으로 합치기보다, 이 사건의 상대방·일시·장소·행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과 인식을 각각 특정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피고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김계환 피고인의 면담강요 혐의와 혼동하지 않아 주십시오.

2. 면담의 경위와 피고인 본인의 언행을 먼저 살펴 주십시오

특검이 문제 삼는 만남은 이윤세 전 공보정훈실장과의 면담 경위 및 그 자리에서의 압박 여부와 관련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만남을 요청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말이 실제로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만남 이전의 연락과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군 조직 안에서 상급자의 요청은 지위 자체만으로도 압박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급만으로 모든 면담을 자동으로 범죄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표면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진술, 동석자 진술, 통화·메시지 자료, 전후 행동과 객관적인 상황이 함께 심리되기를 바랍니다.

3. 대법원 판례가 정한 '면담 강요'와 '위력'의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3도16500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면담 강요'를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시키는 행위로, '위력'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설명합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판례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 당시의 상황, 지위관계, 발언의 의미, 상대방의 처지와 실제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혐의의 실체를 판단하실 때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 상대방이 느꼈을 압박과 그 객관적 근거를 세밀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그 증명책임을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같은 대법원 2023도16500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관계, 면담의 경위와 방법,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위험,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군 조직 운영과 보도 대응이라는 설명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자동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위압적 요구가 있었는지, 업무상 설명·협의와 증언 또는 수사협조를 제약하는 행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사와 변호인 측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판단해 주십시오.

5. 형사사건 수사 개시 전 행위에 관한 판례 기준도 유의해 주십시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도5325 판결에 따르면, 관련 수사나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면담강요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단계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구체적인 상황이었는지, 피고인이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위력 등을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태, 보도 및 신고 상황, 피고인과 관계자들이 알고 있던 내용, 만남에서 논의된 발언의 뜻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사 개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죄라거나, 나중에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인식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공동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의 고의를 구별해 주십시오

공개 보도상 일부 압박성 발언은 문연철 전 부대장의 언행으로 지목됩니다. 그렇다면 김계환 피고인이 그 발언을 직접 하였는지,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과 공동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이를 알면서 함께 가담했는지,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독립적인 행위였는지를 증거에 따라 가려 주십시오.

상급자라는 직위는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지위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모와 고의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실제 공모가 증명된다면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개별 심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7. 적법절차에 관한 다툼도 법률상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특검 수사·기소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공소기각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으로서 법원이 받아들인 결론은 아닙니다. 특정 수사 관계자의 과거 활동만으로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기된 절차상 문제에 실제 법률 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는지는 검토해 주시고, 절차 다툼과 별개로 면담 강요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로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8. 유가족의 아픔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은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순직 사건을 둘러싼 진실 규명과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다른 혐의의 요건이나 피고인 개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지켜야 할 진실과 법이 지켜야 할 절차가 함께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의 정도와 결과, 형법 제51조에 따른 확인된 정상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근거 없는 미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탄원에 더하지 않고, 법률과 기록으로 판단받는 재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저는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올바로 규명되기를 바라면서도, 피고인 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그가 실제로 한 일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큰 논란에서 한 걸음 떨어져 구체적인 발언과 고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증거의 신빙성을 끝까지 살펴주십시오.

이윤세 전 실장의 자유의사와 형사사법절차의 보호도 존중하면서, 김계환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의 판단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상응하는 신중하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마음 깊이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 _____

연락처 : _____